

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「건축법」과 「주차장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

의안 번호	127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
발 의 자 : 양민규, 권영희, 이영실,
홍성룡, 전병주, 노식래,
이병도, 이호대, 김경우,
장상기, 채유미, 김화숙,
김기덕, 이승미, 김광수,
강대호, 이태성, 임종국,
정진술, 조상호, 봉양순,
황인구, 김태호, 김경영,
김제리, 김정태, 김호평 의원
(27명)

1. 주 문

-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초자치단체(자치구)가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하고 원상회복하는 데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(서울시)가 불법건축행위 등을 직접 조사·점검·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「건축법」과 「주차장법」 개정을 건의함.

2. 제안이유

- 일부 시민의 불법건축행위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내 주차장 부족 현상

이 심화되었음.

- 현행 「건축법」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, 현행 「주차장법」 역시 법을 위반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주차장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음.
- 그러나 서울시 기초자치단체(자치구)의 경우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,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행위로 얻는 이득이 더 높아 불법행위가 제대로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, 주민의 반발 등이 거세 지역 사회 내 주차장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초자치단체(자치구)가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하고 원상회복하는 데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(서울시)가 불법건축행위 등을 직접 조사·점검·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「건축법」과 「주차장법」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.

3. 이 송 처

- 대한민국 국회, 국토교통부, 서울특별시

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「건축법」 과 「주차장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

현행법령에 따라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물에 산정된 최소한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여야 하고, 부설주차장은 단체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
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이를 어긴 채 건축물 완공 후 불법적인 구조변경 등을 통하여 가구 수를 늘리고, 주차장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함(이하 “불법건축행위 등”)으로써 지역사회 내 주차장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다.

이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현행 「건축법」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, 지역사회 내 건축과 관련된 허가권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. 현행 「주차장법」 역시 법을 위반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주차장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건축행정 운영에 관한 지도·점검 계획과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, 기초자치단체(자치구)는 실질적인 실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울시로 송달하는 형태로 불법건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.

그러나 서울시 기초자치단체(자치구)는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,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행위로 얻는 이득이 더 높아 제대로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, 주민의 반발을 우려한 단속 의지 약화로 인하여 지역사회 내 주차장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초자치단체(자치구)가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하고 원상회복하는 데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(서울시)가 불법건축행위 등을 직접 조사·점검·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「건축법」과 「주차장법」 개정을 건의한다.

2020년 2월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